## 전문위원 검토보고

O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##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 1．발 의 자 ：장병학 교육의원

## 2．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：2012년 6월 4일
O 회부일자：2012년 6월 5일

## 3．제안이유

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고충을 해소하여 충청북도교육발전에 이바 지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．

## 4．주요내용

가．상담대상자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（사립학교 포함）교직원으로 함（안 제2조）．

나．상담내용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규정된 교육감 관장사무로 하며，상담 방법은 전화나 방문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고，상담변호사는 상담과 관련 업 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을 금지하도록 함（안 제3조부 터 제亏조까지）．

다．상담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 거규정을 마련함（안 제6조）．

## 5. 검토의견

O 본 조례 제정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에 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고, 상담변호사는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의 비밀유지를 하도록 한 것으로,

○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 사안을 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교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.

$\square$ 없 음

